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9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 장철민 • 민병덕 • 한창민

이인영 · 이춘석 · 이재관

김한규 · 윤건영 · 한병도

김준혁 • 이수진 • 황정아

김태선 · 고민정 · 이용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12).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2 전단 중 "임신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로, "출산한 자녀"를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출산한 자녀"를 "출생 자녀"로, "임신한 근로자"를 "근로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u>임</u>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u>근</u>		
<u>신 중인 근로자</u> 가 업무수행 과	로자		
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제3			
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u>해당</u>		
인하여, <u>출산한 자녀</u> 에게 부상,	근로자의 출생 자녀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u>출산한 자녀</u> (이하 "건강손상자	<u>출생 자녀</u>		
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			
생한 당시 <u>임신한 근로자</u> 가 속	<u>근로자</u>		
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